

‘97 동두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견

의안 번호	3 - 12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'98. 8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제 안 이 유

-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가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하되,
- 위원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음.

주 요 골 자

-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,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중 선임토록 규정함에 따라,
- 지난 30여년간 양주군과 우리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당시 81. 7. 1 ~ '82. 8. 9 까지 본청 경리계장으로서 세출 및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음은 물론, '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최 석동씨를 위원으로 추천함.

